

「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2023년 수출 기초역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안경의 수출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수출 기초역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안경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수출 기초역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03. ~ 11. [9개월 정도]
- 사업목적 : 글로벌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수출 기초 역량 강화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사업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oia.or.kr), 아이웨어포털(www.eyewearportal.or.kr)을 통해 공지
- 지원예산 : 선정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직접지원
 - ※ 기업별 선(先) 집행(비용완납), 후(後) 지원금 지급(기업 선집행금 범위 내에서 지원)
 - ※ 참여기업 부담 10% 이상 필수 / 부가세, 각종 수수료 등은 참여기업 전액 부담
-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안경 브랜드 보유 안경기업
 - 안경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안경」 및 안광학 산업군에 포함된 종목 명기
 - ※ 품목 :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 약세서리 등
 - 안경 브랜드 보유 기업(아래 2개 조건 중 1개 조건 부합 필수)
 - 1) 자체 안경 브랜드 상표권 보유
 - 2) 안경 브랜드의 국내 독점 상표권, 유통권 보유 - ※ 단, 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사업 글로벌안경브랜드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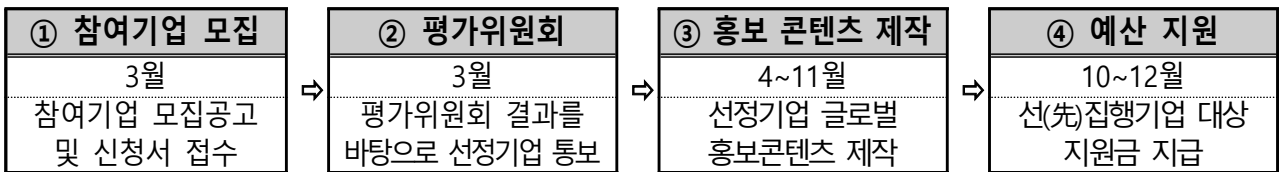
2. 지원내용

구 분	수출기초역량지원
지원형태	수출 초기단계 기업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기초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기반 마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범위 : 수출 컨설팅, 수출용 홍보물(브로슈어, 영상 등) 또는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영문 상세페이지 제작 등), 통번역 지원 등 ※ 선정기업 확정 후, 상기 범위 외 홍보 콘텐츠 제작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

※ 세부 내용은 기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안내

□ 절차안내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3. 03. 10. ~ 03. 26. 18:00까지

1) 우편제출 : 03. 24.(금) 18:00 까지 도착 우편물에 한함

※ 주소 : (4149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7층 전략연구팀

2) 메일제출 : 03. 26.(일) 18:00 까지 도착 메일에 한함

○ 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기간 내 하기 서류 이메일 제출

※ 서류 제출 : 전략연구팀 문소영 사원(msy@koia.or.kr)

연번	신청서류	비 고
1	2023년 수출 기초역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1
2	2023년 수출 기초역량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 선정기업은 제출한 '수행계획서' 내용과 동일한 산출물 제작	서식 2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 및 신청 약약서(대표자)	서식 3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담당자)	서식 4
5	지원사업 성실참여 약약서	서식 5
6	중복지원금지 약약서	서식 6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8	상표등록증 또는 브랜드 독점 상표권, 유통권 보유 증빙자료 사본	-
9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10	최근 3년간(2020년 ~ 2022년) 재무제표 ※ 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②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 ③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일	-
11	최근 3년간(2020년 ~ 2022년) 수출실적증명원 ※ ① 한국무역협회 작수출실적증명 ② UtradeHub(www.utradehub.or.kr) 간접수출증명 중 택일	-
12	제품 정보자료(고해상도 브로슈어 등) 또는 제품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정보	-

□ 선정안내

- 선정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위원회(서류평가) 진행 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방법 : 외부 평가위원회(7명 이내) 구성 후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총 70점 이상 기업 선정 대상)
· 평가항목

항 목	평가내용	배점
브랜드(디자인) 역량	1-1.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 여부, 타깃의 명확성 1-2. 제품 디자인 차별성 및 우수성 1-3.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업의 의지 및 노력	15
추진계획 구체성 및 기대효과	2-1. 지원사업 참여 배경(필요성) 및 의지 2-2. 지원사업 참여 및 수행 구체적 계획 여부 · 예상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 전략 여부 · 예상 산출물 창의성 및 도전성 2-3. 지원사업 활용 역량(예상 산출물 구체적 활용 전략 등)	40
수출 역량	3-1. 수출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여부 3-2. 수출 역량 · 해외 상표등록 및 해외 인증 여부 · 해외 바이어 대상 마케팅(홍보) 역량 · 그 외 해외시장 경쟁력 등	30
기업 역량	4-1. 구체적 · 체계적 수행계획서 작성 여부 4-2. 지원사업을 통한 신청기업의 역량 제고 가능성	15
합 계		100

□ 지원제외(유의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1)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2)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인 경우
 -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채납처분이 있는 경우

- 4)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6)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8)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9)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10)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11)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12)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13)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14)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참여기업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5) 진흥원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대상 기업인 경우
- 16) 그 외 개별 세부사업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4. 문의처

- 사업문의 : 053-350-7854(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전략연구팀 문소영 사원)
- 대표문의 : 053-350-7857(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전략연구팀 허욱 주임)
- 팩스번호 : 053-353-7812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진흥원 홈페이지(www.koia.or.kr), 아이웨어포털(www.eyewearportal.or.kr)을 통해 확인